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74
----------	-------

발의연월일 : 2026. 4. 28.

발 의 자 : 정동만 · 박성훈 · 김기웅
박성민 · 김성원 · 김선교
서명옥 · 서천호 · 조배숙
이양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8월 11일 시행 예정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반도체산업의 범위에는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 등을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외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설계자산을 위탁받아 제조·공급하는 산업 등이 포함됨.

그런데 비메모리반도체에 해당하는 전력반도체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변환·제어하는 반도체로서 전기자동차산업, 인공지능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도체인데, 법률에 ‘전력반도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근거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반도체산업에 전력반도체를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력반도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범

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법률 제 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337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시스템반도체”를 “시스템반도체, 전력반도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21337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반도체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u>시스템반도체</u>, 광 개별소자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라. (생략)</p> <p>2. (생략)</p>	<p>법률 제21337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p> <p>제2조(정의) ----- -----.</p> <p>1.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u>시스템반도체</u>, 전력 반도체----- ----- -----</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라.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